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23호

나. 발 의 자 : 김길영 의원(찬성자 28명)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16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국·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와 지도자, 임원 유니폼, 이동차량 등에 서울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및 임원이 경기·훈련 등에 참가를 위해 활용하는 피복, 차량 등에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부치게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안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8월 16일 발표된 신규 서울 브랜드인 을 경기·훈련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및 임원의 피복과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- 서울 브랜드인 은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올해까지 382건 표출 및 홍보된 바 있으며, 「서울 신규 브랜드 활용계획」(정무부시장 방침 제4호, 서울브랜드담당관-6750호, 2023.8.22.)에 따라 서울시 전 실·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 활용되고 있음.

또한 전국체전 서울시선수단 단복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복 및 임원복에 을 부착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.

-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를 도시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등에 출전할 때 서울시 브랜드

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가 간접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생략) <신설>	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수탁자는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직장운동경기부 피복 등에 서울시 브랜드 활용(안 제10조제3항)

○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경기부”라 한다)는 2024년 10월 기준 23개 종목 25개팀 188명(지도자 33명, 선수 155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경기부의 운영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음.

○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·운영 규정」을 보면 제30조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들이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시에 차량을 확보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,

동 규정의 제37조는 경기부가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별도의 기준에 따라 피복을 지급하고 있음.

- 동 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리하거나 배부하는 물품에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바, 경기부를 관리·운영하는 수탁자는 규정을 통하여 물품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이를 정함에 있어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부 경기복의 로고 사용에 있어 서울시 관련해 어떤 로고를 붙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됨.
- 다만 대한체육회가 주관, 주최, 운영, 파견, 관리하는 모든 국내·외 경기대회는 대한체육회의 마케팅규정이 우선되기에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자산 및 상업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실행해야하므로, 경기부가 서울시 로고 사용에 있어 대한체육회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임.
- 또한 펜싱, 태권도, 산악, 쇼트트랙 등 일부종목은 국제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연맹에서 로고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경기인의 경기복에 서울시 로고 부착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검토를 통하여 서울시 로고를 붙일 수 있는 종목·대회 등을 미리 명확히 파악하여,

경기부의 경기인이 서울시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였을 때 로고로 인하여 경기인 또는 지도자가 종목별 국제연맹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검토에 충실해야 할 것임.

의안번호
2223

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김길영 의원 (도시계획균형위원회)	2024. 10. 1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 내용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와 지도자, 임원 유니폼, 이동차량 등에 서울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함 <p><주요 입법 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자의 '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서울시 휘장 및 브랜드 부착 및 홍보 노력 의무' 조항 신설 (안 제10조 ③항) 				
추진 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4. 10. 16. 김길영 의원 발의 - (찬성) 강석주, 김경훈 의원 등 28명 				
부 서 검토 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례안은 경기·훈련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의 피복과 차량에 서울브랜드 로고 노출로 시민들과 체육인들에게 서울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 				
대응 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 임 위 처리 결과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향 후 계 획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담당 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변상우(☎2133-2688)	담당	김동인(☎2133-2687)